

일련번호

2017 - 0003

# 기부금영수증

**① 기부자**

성명	인천국제공항공사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21-81-29114
주소	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-47		

**② 기부금 단체**

단체명	사) 영종도발전협의회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121-82-15164
소재지	인천 중구 운남로 64-23	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	지정 공고 번호 : 168

**③ 기부금 모집처 (언론기관 등)**

단체명		사업자등록번호
소재지		

**④ 기부내용**

유형	코드	구분	년월	내용	금액
지정	40	금전	2017. 10. 13	공익단체 후원 기부금	300만원
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,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0월 13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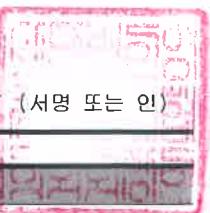
신청인

인천국제공항공사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.

기부금 수령인      사단법인 영종도발전협의회 이사장 (서명 또는 인)

## 작성방법



- “2. 기부금 단체”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.(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2호 나목,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제1호) 다만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인간단체의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공고번호 및 기부금 인정기한을 기재합니다.  
[예.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-249호(2014.12.31)].
- “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”는 방송사, 신문사,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- “4. 기부내용”란에 적는 유형·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
 

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	: 법정, 코드 10
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	: 정치자금, 코드 20
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(제1호 및 제11호 제외)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3, 코드 30(2011.6.30이전까지 지출한 경우)	
라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신탁기부금 : 조특법 73 ① 11, 코드 31(2011.6.30이전까지 지출한 경우)	
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에 따른 기부금	: 지정, 코드 40
바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	: 종교단체 코드 41
사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	: 우리사주, 코드 42
아.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)	: 공제제외, 코드 50
- 구분란에는 “금전기부”의 경우에는 “금전”, “현물기부”의 경우에는 “현물”로 적습니다.